
제26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5. 10. 25(금) 08:00-09:15

○장소 : 본회의실

(협의사항)

1. 고가특수 의료장비 리스사용료 재확인

보사부 회의시 리스료는 년 13% 정도지만 장비 감가상각비까지 부담함으로써 병원은 실제로 년 27%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는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산출근거를 재확인하고 리스사용 조건이 리스회사와 병원의 사정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보사부의 리스사용 한도액 설정에 대해서 본회는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기로 하다.

2. '86 아시안게임 의무지원 대책

병원계가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대회의 의무지원을 당연히 지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계획안을 검토한 바 진료대상만 명기되었을 뿐 진료비(특히 입원 진료비 기준, 진료비 지불방법 및 각종 검사비용 부담문제 등)에 관한 기준과 한계가 불명확하고 지원인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수당을 조직위원회에서 부담 지원하는 문제 등 사전에 명백히 규정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본회는 LA 올림픽대회에 참여한 바 있는 김영명병원장을 포함 본회측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관계관과 절충하는 방향으로 이 업무를 회장단에 위임하다.

제27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5. 11. 1(금) 08:00-09:2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병원출연에 관한사항 연구검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병원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추구를 방지함과 동시에 의료인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취약지 민간병원의 구제 및 의료투자의 유인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신중히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감사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중 제2안에 대한 문맥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 고문번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기로 하다.

(승인사항)

1.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기념품 선정

'85. 11. 22-11. 23일 본회 주최로 개최 예정인 병원관리 종합학술

대회 기념품 선정은 동아실크제 넥타이로 하되 이 학술대회 기념표기는 넥타이 뒷면에만 표시키로 하다.

2.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 건의

회원병원으로부터 취합 정리한 진료수가 산정방법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등 의료보험수가 기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건의키로 승인하다.

제28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5. 11. 8 (금) 08:00 - 09:1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의료부조제 실시 계획에 대한 대책

국민층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계획인 의료부조제는 의료보험수가의 83%에 불과한 비현실적인 의료보호수가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게 됨으로써 병원의 경영난을 가일층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부조제 대상자의 진료수는 최소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진료병원에 국공립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줄 것과, 지역 행정관서에서 발행하는 의료보호진료증의 5-10%를 의료보호진료 지정병원에서 배정하여 돌발적인 가정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실제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병원장이 의료보호진료증을 발행케 함으로써 병원의 악성미수금 발생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하다.

2. 회비 및 심사비 미납병원에 대한 납부 대책

회비의 납부는 회원의 기본의무의 하나이므로 특히 수련병원 중 다년간의 회비와 심사비 미납병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납부토록 재촉을 발송키로 하고 향후 전공의 정원채정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규제방법을 검토 시행키로 하다.

3. 환자의 관리선언 초안 설명회 참여

본회 제25차 실행이사회('85. 10. 18)에서 환자의 권리선언 토론자 추천을 유보키로 의결, 본회는 불참하였으나 이번 설명회에는 본회 사무국 회원병원의 직원이라도 참관하여 그 내용을 방청키로 하다.

(승인사항)

1. AHF 사무국 회비잔액 송금 유보

1981. 5 - 1985. 5 까지 본회 조운해 전 회장이 AHF 회장직에 재직하는 동안 회원국 회비 등 4백28만6천5백87원(4천7백63달러)의 잔액을 신임 회장국인 인도네시아 병원협회로부터 2차에 걸쳐 송금요청을 하여 왔으나 본회는 AHF의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AHF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송금키로 하다. *